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021-87
----------	---------

제안년월일: 2021년 8월 30일

제안자: 행정재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0-95호), 정정희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1-15호)을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2021. 8. 30.)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정책협의회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규제 조문 및 수강료 미반환 규정 등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2)

- 다. 운영 위탁기준 정비(안 제5조)
- 라.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완화
(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근거 명확화
(안 제7조의2제2항)
- 바. 수강료는 조례 별표1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7조의3)
- 사.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 확대
(안 제7조의4)
- 아. 조례 별표2를 삭제하여 수강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원칙으로 수정하여
적극행정 유도(안 제7조의5제1항)
- 자. 도서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 제22조)
- 차.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23조 ~ 제26조)
- 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제30조
- 2)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의2
- 3)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8조의2

나. 협조부서: 교육지원과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필요한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에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의 도서관의 용어는 법을 따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제1호 중 “공중에의 이용”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직원을지휘·감독한다”를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장은 도서관 강의 및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설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징수”를 “각호의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면제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면제
4.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면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경

제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4(수강료 감면)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5제1항제2호 중 “불가능 한”을 “불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강신청자가 수강 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도서관 시설의 훼손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자료를 망실 또는”을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에”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분증 소지자”를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경우에는자료”를 “경우에는 자료”로 한다.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중 “검수시 동자료”를 “검수 시 같은 자료”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자료”를 “다른 자료”로,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시”를 “교환·이관·폐기·제적 시”로,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3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서로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도서관정책협의회

제17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 관련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논의
3. 도서관 발전 방안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구성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

장,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 강서구의회 의원 2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립도서관 관장 1명
2.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회의개최)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3조(설치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해 도서관장과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주민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소장자료의 폐기·제적, 불용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25조(회의개최)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앞에 “제7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5장 보 칙을 제7장 보 칙으로 한다.

제20조를 제29조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u>서울특별시강서구</u>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u>필요한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따라</u> ----- ----- ----- ----- ----- ----- ----- <u>서울특별시 강서구</u> ----- ----- -- <u>필요한 사항</u>----- -----.</p>
<p>제2조(설치) <u>서울특별시강서구</u>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u>서울특별시강서구</u>(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p>	<p>제2조(설치) <u>서울특별시 강서구</u> 구립도서관----- --- <u>서울특별시 강서구</u>-----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도서관</u>”이라 함은 <u>도서관자료</u>를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u>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육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도서관</u>”이란 「<u>도서관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u>도서관</u>을 말한다.</p> <p>2. “<u>도서관자료</u>”란 <u>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도서관자료</u>를 말한</p>

지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다.

3.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에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의 도서관의 용어는 법을 따른다.

제3조의2(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3. (생략)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5. (생략)

<신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생략)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

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 공중의 이용에 제공

2.·3. (현행과 같음)

4. 다른 -----

5. (현행과 같음)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직원을 지

회 · 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 열람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 · 감독한다. -----

-----.

제7조(시설사용 등) ① 관장은 도서관 강의 및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설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용료 등 징수) ① ---

--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면제
-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③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감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3(수강료 등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수강료 및 징수방법

행사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면제

4.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면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

분의 50 감경

<삭 제>

제7조의3(수강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4(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
인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
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
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
액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라 수강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5(수강료 등의 반환) ①수
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
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강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4(수강료 감면)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
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5(수강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
여야 한다.

다.

1. (생략)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환불
3. (생략)
4.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③ (생략)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1. (현행과 같음)

2. -----

-- 불가능한 -----

3. (현행과 같음)

4. 수강신청자가 수강 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도서관 시설의 훼손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기타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하는 경우

제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장의 제한) -----

----- 사람 -----
-----.

제12조(대출) ① ----- 각 호 ----- 사람에게 -----
-----.

1. -----
----- 사람
2. -----

-----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
----- 그 밖에 -----
----- 경

우에는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자료) 구 및 구의회
물품출납원은 각 담당관·과에
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
시 동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
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
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
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
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
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
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
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
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우에는 자료-----
----.

제15조(행정자료) -----

----- 검수
시 같은 자료 -----

-----.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
----- 다른 -----
----- 서로 -----

② ----- 따른 자료-----
--- 교환·이관·폐기·제적
시-----
----- 제3조에
따른다.

<삭 제>

제5장 도서관정책협의회

제17조(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정책

<신 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 관련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논의

3. 도서관 발전 방안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8조(구성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 도서관 업무

<신 설>

<신 설>

담당 과장, 강서구의회 의원 2 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립도서관 관장 1명

2. 교육·문화·도서관 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

<신 설>

<신 설>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신 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3조(설치 등) ①-----

-----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해 도서관장과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주민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직원으로서 둔다.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신 설>

<신 설>

제5장 보 칙
제18조 ~ 제19조 (생 략)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소장자료의 폐기·제적, 불용 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25조(회의개최)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 ~ 제28조 (현행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별표 2] (신설 2008. 7. 17)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제5항)

구분	반환수당 발생인	반환금액	
제7조제5 제4항의 반환 수당에 따른 경우	수업시각 전	이대 원 학습비 전액	
	가. 수강료 정수기간의 1개월 이 내인 경우	출수일시점의 1/6이 지나기 전	이대 원 학습비액 2/6 해당액
		출수일시점의 1/2이 지나기 전	이대 원 학습비액 1/2 해당액
		출수일시점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 수강료 정수기간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각 전	이대 원 학습비 전액	
	수업시각 후	반환수당이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정 수기간의 1개월 이내인 경우 에 한하여)를 제외한 수강료분 일한다)과 나머지 달의 수강 료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출수일시점은 수강료 정수기간 중의 출수일시점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수당이 발생한 날짜의 결재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시행규칙) -----
 필요한-----
 -----.

<삭 제>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 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2.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3. (삭제 2017.12.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7.12.28.)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신설 2017.12.28.)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19.7.1.)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신설 2017.12.28.)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 모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개정 2017.12.28.)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9.5.10.)
-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7.17.)